

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

2023. 11. 27.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
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(개정)

1 신청사유 (글로벌금융과, 2023. 11. 24.)

- (개정 내용) 사전신고의무의 사후보고 전환, 중복신고 의무 면제 등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시 부담하는 신고의무 완화
- (신청 사항)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간 금융회사들이 부담감을 호소해왔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전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

2 검토 내용

- 금융회사들이 대폭 완화된 규정을 신속히 적용받아 해외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인정됨
- 따라서, 규정변경 예고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 - ※ 「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20조등에 따라 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사전 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. 단축도 가능(동 규정 제20조제3항)

3 처리 의견

- 사전예고 기간 : '23.11.27.~'23.12.10.(14일간)